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0일, 송옥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7.) 상정, 축조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옥주 의원)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해당 금액은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6,414만원에 이르게 된 현재까지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직불금은 물론 농민공익수당, 취득세·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보조사업 지원 등 농업 전반의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됨에 따라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은 물론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제한을 유발할 뿐 아니라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으로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개정안은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연 3,700만원으로 설정한 이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6,414만원에 이르게 된 것을 고려한 것임.

이에 더해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에서 “직전 연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¹⁾.

현행법령상의 기준(연 3,700만원)은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기준 뿐만이 아니라 취득세·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보조사업 지원 등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됨²⁾.

1) 개정안을 발의한 송옥주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현행 농외소득 기준액대비 10% 정도 상향하는 수치를 역산한 것이라고 함

- ‘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전국가구 소득액 6,180만원 $\times$ 0.65 = 4,017만원으로, 현행 농외소득 기준액 3,700만원 대비 약 8.6% 상향한 수치임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그 결과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은 물론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사람을 가급적 줄여 수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더욱이 도·농간 소득 격차의 심화에 따른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2023년도 기본직불금 신청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제외된 대상은 평균 10,167건으로, 직불금 지급 규모로는 약 120억원에 해당하며,

이 중 농외소득 기준을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할 경우 수급이 가능해지는 대상은 2021~2023년간 평균 4.4천건, 약 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함³⁾.

다만, 자구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으로 “신청자의 가구원에 따른 소득기

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3) 다만, 이는 직불금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추산한 수치이며, 기존에 신청하지 않던 농가가 추가 신청 시 소요되는 예산은 추산하기 어려움

준금액”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로는 “중위소득, 가계조사통계의 가계소비지출액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